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나27665(본소), 2019나27672(반소) 판결 [임차권
확인청구의 소 건물인도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나27665(본소), 2019나2767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520784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반소원고) ㉠ 피항소인

요공사

변론 종결 2019. 8. 22

판결선 고 2019. 9. 30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5207840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별지 기재 임대차기간과 임대료로 정한 임차권자임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판사 최한돈판사 이광영

별지